

2021년

문화다양성주간

Cultural Diversity Week

2021 다(多)가치포럼 1차 토론회

주
일
장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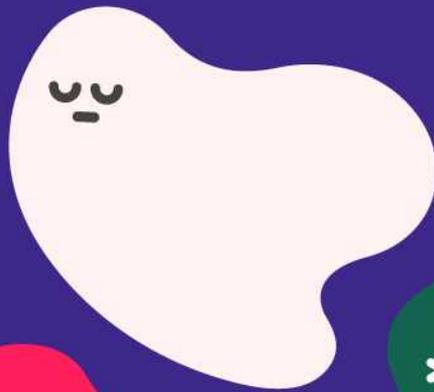
제 혐오와 차별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시 2021년 5월 21일(금) 15시

소 구로문화재단 유튜브  YouTube

제 양혜우(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문현아(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주최·주관
후 원

구로문화재단 

Southwest 
Seoul Global Center
서울서남권글로벌센터 西南首尔國際中心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목 차

01 행사순서	05
----------------	-----------

02 주제발표	07
----------------	-----------

양혜우,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09
--------------------------	----

문현아,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31
------------------------	----

03 주제를론	49
----------------	-----------

김동훈, 서울시서남권글로벌센터장	50
-------------------	----

최현호, 다(多)가치포럼운영위원	53
-------------------	----

01

2021 다(多)가치포럼

제1차 토론회

행사순서

2021 다(多)가치포럼 제1차 토론회 행사순서

시 간	내 용
14:30 - 15:00	참석자 등록
15:00 - 15:05	개회 및 사회자 인사
15:05 - 15:15	인사말
15:15 - 15:20	포럼안내 및 단체사진 촬영
15:20 - 16:00	주제발표
16:00 - 16:20	주제토론
16:20 - 16:40	토론 및 질의응답
16:40 -	폐회

- 좌 장 전춘화(홍익대학교 상경학부 교수)
- 발 제 양혜우(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문현아(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 토 론 김동훈(서울시서남권글로벌센터장)
최현호(다(多)가치포럼운영위원)

02

2021 다(多)가치포럼

제1차 토론회

주제발표

**안전, 무임승차, 민족정체성 공포와
외국인 혐오**

양혜우

경희대학교 비교문화 연구소 전임 연구원

들어가면서: 제주예멘난민과 외국인 혐오의 발화

2018년 제주도에 입국한 527명의 예멘 난민의 입국은 우리 사회 관용의 정도를 보여주는 핵심 단초였다. 관용이 주류의 가치와 규범에 대한 변형 없이 타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권력의 산물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며 부정의와 갈등을 탈정치화한다고 비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염과 폭력으로 얼룩진 고향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예멘 난민들에 대해 환대는커녕 관용이라도 베풀 수는 없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세계 경제규모 11~12위의 경제 지표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원하던 원하지 않는 세계의 참화에 외면할 수 없는 국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 과거 해외원조의 주요 수혜국이었으나 이제는 연 3조 2,003억 원의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을 추진하고 연 1,402억 원을 무상으로 원조하는 후원국으로 발전했다. 해외원조를 하는 이유는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우리의 삶과 경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랍의 봄이라 일컫는 시민혁명의 외침을 공유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 환호하며 연대를 보낸 것처럼 아랍의 봄에 들이닥친 흑한 서리를 견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과거 참혹한 전쟁 속에서 평화와 민주주의가 얼마나 귀중한 가치이며 실천인지를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가진 한국이 해야 하는 책임 있는 응답의 하나다. 그러나 지난 2015년 한국에 비호를 요청한 시리아 난민 28명에게 난민 지위 인정 심사를 거부하고 창문 하나 없는 송환 대기실에 6개월 넘게 구금한 사건이나 527명의 제주예멘난민들을 향한 언사는 멸시와 냉대를 넘어 증오와 혐오로 가득했다. 난민 남성은 사회적 약자로서 지위를 갖지만, 내국인 여성의 지위를 압도하는 성별 계급성으로서의 강자성을 갖는다는 한 페미니스트 학자의 주장은 한국인 여성에게 탐나는 피해자의 지위를 공고하게 했고, 여성 인권과 반성폭력의 수사는 이슬람 난민 남성의 입국을 거부하는 정당한 근거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차별받는다고,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남성에게도 차별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누구나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권력을 가졌고, 또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우리는 차별의 다중성을 인식해야하며, 차별의 중첩성과 교차성을 통한 입체적 분석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차별과 혐오의 지점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난민수용 거부에 동조한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와대 청원에 서명했고, 기독교 보수우파세력과 여성, 일반국민이 합세한 난민반대 집회가 10차례 이상 열렸으며 여전히 진행형인 것은 난민문제를 전 지구적 관점에서 맥락적으로 이해하기보다 개별 사건에 주목하게 함으로 한 집단에 대해 편견과 낙인을 작동시키는 공포의 정치공학적 효과이다.

제주예멘난민 신청자들 중 단 2명만이 난민인정지위를 받고 412명이 인도적 지위

를 받은 후 75%의 사람은 수도권 등지로 흩어졌다. 난민인권단체 등 진보적인 60여 개의 시민사회 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내전과 강제징집 피신은 전통적인 난민보호 사유 중 하나이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합의한 협약 이행을 책임 있게 수행 하라고 촉구한 반면, 반난민 단체들은 마땅히 추방해야 할 대상들에게 인도적 체류자 격을 부여했다고 분노하며 난민문제를 넘어서 불법체류자 추방, 다문화정책 폐지, 중국동포 추방 등 모든 이주민의 권리에 반대하는 총궐기로 응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주민의 권리 보호에 동조하는 국회의원 사무실과 도의원 사무실, 이주민 인권단체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고 이를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하는 등 반난민·반외국인 집단의 혐오는 점점 노골적이며, 조직적이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집회는 난민반대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그 대상은 중국동포, 다문화가족, 불법체류자, 심지어 난민과 이주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확대되고 있다. 집회 참석자들은 외국인을 혐오해서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불안,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활비 지급과 막대한 다문화가족지원 예산, 대한민국의 이슬람화와 민족정체성 훼손 등이 우려되어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핵심 사항은 크게 안전, 무임승차, 민족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요약된다.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안전(공포), 무임승차, 민족 정체성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타당한 이유일까?

외국인 혐오 담론 - 공포론

『혐오사회』의 저자 캐롤린 엠케는 우리 삶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소수자 혐오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감정이라고 주장한다. 혐오는 개인적인 것도, 우발적인 것도, 단순히 실수나 공지에 몰려 자신도 모르게 분출하는 감정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따라 집단적으로 형성된 감정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혐오로 분출되려면 미리 정해진 양식이 필요하고 모욕적인 언어표현, 사고와 분류에 사용되는 연상과 이미지들, 범주를 나누고 평가하는 인식 틀이 미리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지 어느 날 느닷없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520명의 예멘 난민으로 인해 반외국인 정서와 외국인 혐오가 공공연히, 노골적으로, 공적으로 드러난 원인은 무엇일까? 누가, 무엇이 외국인의 혐오를 키우고, 혐오를 훈련하고 양성해왔을까?

수많은 젊은 여성을 반 난민집회로 불러 모은 핵심 의제는 범죄, 불안, 공포였다. 한 번도 만나거나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없는 낯선 타자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수많은 합리적 근거에 대한 질문 던지기를 거부하고 다만 불안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공적 논의에 설득력을 갖는 것처럼 보였다. ‘주권자인 국민이 불안하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

느냐’는 주장이다. 집회참가자들은 불안의 근거를 증명하기 위해 외국인의 범죄를 고 발하는 사례로 대부분의 연설시간을 할애했고 불안과 공포의 원인이 외국인 특히 이 슬람 난민과 불법체류자, 중국 동포에게서 비롯됐음을 강조했다. 노기 띠 여성 발언자 가 조목조목 일시와 국적, 사례를 들어 외국인의 범죄를 나열하면, 집회 참석자들은 범죄 목록마다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채 “미쳤다”, “안~돼”, “몰아내”를 외치며 불안 과 공포감에 몸을 떨었다. 사례들은 잔인하고 끔찍했으며 어린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공포스러운 사건들이었다. 거론된 사례들은 오원춘 사건과 같이 실제 일어난 사건 들도 있었고, 근거 없이 떠도는 가짜 뉴스나 사건의 팩트를 왜곡한 사건들을 뒤섞어 서 더 공포스럽게 각색했고 더 부풀려졌다. 불안과 공포에 몸서리를 치는 집회참가자 들의 모습은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주의자라는 정치적, 도덕적 비판을 받을 소지를 막 기 위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현대 인종주의는 피부색이 아닌 종교적 신념과 문화 를 근거로 한다. 인종차별에 대한 형태가 달라지고 강조점도 변하고 있는 것이다. 과 거 인종주의가 타자에 대한 문명, 야만, 열등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면 현대 인종주 의는 자신에 대한 안전, 정체성, 시민권 보호를 근거로 삼고 이와 같은 개념을 중요하 게 부각시킨다.

이슬람 연구자 김동문 목사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생산되는 가 짜 뉴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우리는 왜 이슬람을 혐오할까』라는 저서를 통해 이슬람 괴담에 대해 사실관계를 적시했다. 기도를 방해한 서울대 교수 살해협박사건, 할랄식 품단지 반대운동 전말, 무슬림 성직자가 아기를 살해한 사건, 무슬림 집단강간 놀이 타루하시 등 차마 입으로 표현하기도 끔찍한 내용에 관한 것들이다. 이슬람괴담의 창 작성과 가공성은 실로 놀라울 만했다.

그 중 한가지 사례를 들어 보자. 이른바 서울대 공대 무슬림 학생 사건이다. ‘어느 서 울대 공대교수가 조찬기도회에서 한 증언’이라며 신뢰성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는 시작 된다.

최근 서울대 공대에는 한 두명이었던 무슬림 학생들이 여러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했 다. 어느날 무슬림 학생들이 강의 도중 벌떡 일어나 땅바닥에 엎드려 큰 소리로 기도 를 하면서 수업을 방해하기 시작 했다. 그러자 교수가 “나는 제군들의 종교를 존중한 다. 그러나 지금은 강의시간이니깐 밖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다시 수업에 참여해 달 라”라고 정중히 부탁했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무슬림 학생들이 사무실로, 집으 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알라를 경배하는데 방해했다’며 ‘당신을 처형하겠다. 너 의 둘째 딸이 어느 유치원에 다니는지 알아냈다’라는 협박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한 무슬림 대사관에서는 학교측에 항의하며, 기도를 방해한 교수를 처벌할 것과 무슬림 학생을 위한 기도 처소를 만들 것, 학생들의 종교생활을 위해 학생 10명당 이맘 1명 파견을 보장하라는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2013-2014년 바른미래당 이해훈의원이 ‘이슬람바로알기’라는 교회 순방 신앙간증을 통해 전파되었다. 위 사례 외에도 이해훈 의원이 밝힌 이슬람 전말은 사실 왜곡과 악의적 편집으로 가득했다. 예멘난민문제가 발생한 후에는 자유한국당 최은혜 여성분과 부위원장은 이해훈 의원의 증언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며 예멘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사례로 인용했다. 그러나 기자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서울대 어떤 학과에서도 이러한 일이 없었다고 한다.

무슬림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수많은 사례는 SNS를 통해서 심지어 공적인 지위에 있는 종교인, 정치인들을 통해서도 가공되고 조작되고 있다. 정보의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정보가 사실처럼 들리느냐가 관건일 뿐이다. 속으로는 원한과 경멸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안전을 걱정하는 모습을 띠므로 난민거부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외국인에 대한 공포괴담은 미움보다는 싫음을 유발시킨다. 미움은 윤리적 반응에서 비롯되지만 싫음에는 이유가 없다. ‘왜?’라는 질문을 중지시키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공론의 장을 봉쇄시켜 버린다. 싫음에서는 오는 혐오는 상대방을 동물화하는 감정으로 상대를 나와 질적으로 다른 타자, 열등한 타자, 동물적 타자로 여겨 소통을 거부하고 생각을 부재하게 만든다(김종갑). ‘싫어한다’라는 견해는 ‘겁난다’, ‘무섭다’라는 방식으로 표현되며 ‘무섭다’라는 공포의 변형은 겁먹음, 근심함, 안전에 대한 우려로 나타난다. 공포와 혐오는 별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이 둘은 쌍둥이처럼 닮아있다. 공포라는 정서가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혐오는 공포라는 그림자를 달고 다니기 때문이다. 공포는 특정집단이 자신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불안을 의식적으로 조작하는 정치적 형태로 피해자 의식과 인종적 불만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그렇게 믿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외국인 범죄가 증가함하여 불안과 공포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난민집회 발언자의 주장과 달리 최근 외국인의 범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9년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서 2018년 동안 국내 외국인체류자 수는 15.5%(33만 명) 증가한데 비해 같은 기간 중 전체 외국인의 범죄율은 -25.6% (34,832명)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도가 -25.7%, 살인이 -19.8%로 감소했으며 교통, 폭력 등의 범죄도 줄어들면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외국인의 범죄율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외국인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오히려 더 크게 확산되고 있다. 통계 수치에서 보여주는 팩트와 공포감정의 불일치는 중국동포에게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물론 외국인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2012년 오원춘 사건과 같은 엽기적인 사건으로 인해 더 가중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중국동포’, ‘불법체류’라는 국적과 신원을 강조한 언론 보도는 중국동포나 불법체류 집단 전체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을

심어주었고 불법체류자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추방하라는 요구로 발전하기에 충분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오원춘 사건이후 중국동포 혐오증이 얼마나 심화되었는지 댓글을 통한 추이를 분석한 박미화·김솔은 오원춘 사건 보도와 무관하게 중국동포에 대해서 항상 감정적,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었으며, 오원춘 사건으로 인해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감이 더 강해지거나 훨씬 더 커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는 찾아내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는 특정한 강력범죄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속 있어왔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중국동포에 대해 공포를 갖게 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황해(2010), 신세계(2013), 해무(2014), 범죄도시(2017), 청년경찰(2017) 등 흥행과 화제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영화와 대중매체가 한국인과 조선족과의 거리두기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는 문화연구자들의 분석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 조직폭력, 인신매매, 청부살인, 장기를 밀매 등 한국사회의 질서를 교란하는 사람들로 이미지화되고 한국인들의 삶을 위협하는 자들로 묘사됨으로 중국동포에 대해 막연한 불안과 공포를 키우는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은 이민자에 의한 범죄의 온상이라고 주장한 이후 이민자에 의한 범죄가 더 많아졌다는 생각을 가진 미국인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Robert Adelman 연구팀은 미국 이민자 범죄율은 1980년과 비교하여 늘어난 이민자수에 비해 그대로이거나 줄어든 곳이 더 많았고, 범죄율이 늘어난 도시도 이민자와 범죄와의 인과관계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오히려 이민자가 지역 경제와 문화를 살리는 데 기여하고 범죄율을 줄이는 것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많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를 이유로 외국인의 추방을 정당화하는 것은 안전을 이유로 공포를 통치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상황에서도 외국인의 범죄율이 하락하고 있었으나 외국인에 대한 공포와 불안은 더 크게 느끼고 수용성도 낮아졌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의하면 2018년 다문화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는 52.8%로 외국인 범죄율이 가장 높았던 2015년보다 오히려 평균 1.14% 하락했다. 해외 연구나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는 외국인 범죄율과 불안감은 별 상관관계가 없음을 드러낸다. 범죄와 안전, 불안과 공포 어떤 수사를 동반하더라도 혐오는 타자의 다른 면모를 상상하는 일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 가능성을 가진 존재를 하나의 틀에 맞추어 개인을 집단에, 집단은 하나의 속성으로 표상되게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며 타자에 대한 상상력을 훼손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지점에서 바로 혐오가 발생한다.

외국인 혐오 담론 - 무임승차론

외국인 혐오 담론의 두 번째 근거는 무임승차론이다. 청년실업, 불안전 고용, 저출산 노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경제불황으로 나라살림도 어려운데 외국인에게 과도한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난민반대집회에서 피켓을 든 한 남성 참가자는 “난민에게 432,900원 지급, 의료, 취업, 주거, 교육까지 제공하는데 6.25 참전용사에게는 월 22만 원밖에 주지 않는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예산이 한 해 2천억 원이다. 그래서 나 같은 일반시민이 거리로 나오게 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집회 주제도 “차별금지법 반대, 자국민 혐오 반대”였다. 이러한 주장은 더 나아가 외국인의 임금을 절반으로 삭감하고, 의료보험의 적용을 제외하라는 기본적 권리 박탈로 확대됐다. 우리 부모들이 외국에서 시체 닦으면서 이룬 경제, 6.25 전쟁 때 총알받이로 죽어가면서 지킨 나라, 더 나아가 식민지 설움 속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며 일궈낸 대한민국은 외국인이 함부로 놀러앉아도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분노로 이어졌다. 주권국가의 권한과 난민·이주민과의 긴장 관계는 근대 국민국가가 성립된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문제이다. 특히 인권관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 도덕, 정치적 보편주의와 자치적 원리에 따라 일정하게 테두리 지어진 국민국가의 규범적 불일치 및 시민권과의 간극은 인류사적 과제이다. 일찍이 칸트는 망명권과 성원권을 구분하고, 공화적 주권국가는 위협에 처한 타자의 요청에 응답해야할 의무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모든 사람은 지구 표면에 대한 공동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 나라 땅에 도착한 이방인에 대해 환대권, 친교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칸트의 환대권은 훗날 망명권으로 발전하여 1951년 유엔에 의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으로 명문화 되었고, 한국도 1993년 유엔 난민협약에 비준함으로써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국제적 합의에 동참했다. 집회참석자들이 주장하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월 432,900원 보조금도 위협에 처한 이방인의 구호를 위한 국제적 약속의 일환이다. 그렇다면 난민신청자 지원금은 내국인 역차별을 주장할 만큼 엄청 난 금액일까? 현행 난민법 40조는 난민신청 6개월이 지나야 취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취업 범위도 단순노무 직종으로 한정하고 된다. 사실상 건강한 신체를 가진 성인 남성만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단순노무직종에 진입하기 어려운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은 생계를 막막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법 조항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난민 신청자에 대한 보조금이 책정된 것이다. 그러나 2019년 지원액은 고작 7억9260만원이었다. 2018년 난민신청자 16,173명 중 523명에게 3.5달간 지원됐으며 지원금 혜택을 받은 난민신청자는 약 3%에 불과했다.

난민반대집회의 발언들은 일본의 한국인혐오 단체인 ‘재일 코리안의 특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재특회)’의 주장과 매우 흡사하다. 이들도 재일 코리안들의 무임승

차를 주장하며, 재일 코리안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과 생활보호지원금을 반대하고 있다. “매년 3만 명이나 되는 일본인들이 목매어 자살하는데 외국 국적자인 재일 코리안의 70%가 우선적으로 생활보호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피와 눈물인 우리의 세금을 재일 코리안이 사용해도 좋습니까?” “정부는 일본인을 먼저 구해야죠, 외국인한테만 신경 쓰고 용납이 안 돼요”라며 외국인인 코리안들이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를 부추겼다. 이들 주장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한『거리로 나온 넷우익』의 저자 야스다 고이치는 2011년 12월 일본의 생활보조금 수급세대는 총 149만 7천 329세대로, 이중 재일코리안의 1만 5천세대가 연금을 수령했으며 약 1.7%정도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점차 재일조선학교 보조금, 수도요금 면제, NHK 시청료 면제, 통근 정기권 할인, 공무원 우선채용 등 존재하지 않는 지원과 보조금의 명목 등을 조작했다. ‘보험료를 내지도 않는 코리안이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며 재일 코리안을 기생충에 비교하거나 일본교원노조가 거둔 성금이 조선학교에 기부되었다며 모금사기, 일본인 역차별을 주장했다. 실제 재일 코리안의 생활보조지원금 수급비율은 일본인에 비해 조금 높은 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차별받는 식민지 민중으로 제대로 된 직업을 갖기 어려웠고, 일본정부가 재일 코리안에게는 연금보험가입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령이 된 후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주장이다. 어떤 사실에 사실 아닌 것을 덧붙이거나 왜곡하여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선동은 혐오집단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재일 코리안의 70%가 생활보호지원금을 받으며 일본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난민신청자가 한국인보다 더 많은 정착지원금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주장은 일본의 혐한세력과 그 기초가 일치한다.

무임승차 주장은 난민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중국동포를 향해서도 비난의 화살이 쏘였다. 다문화 정책이 외국인이나 이민자 권리와 복지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내국인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여 내국인 역차별 및 손해가 발생하고, 선주민의 불만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심양섭, 김지영, 2016, 17)는 연구 논문들도 무임승차론, 국민 역차별론에 힘을 실었다. 일반국민들의 혈세로 구성된 다문화 혹은 사회통합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 채 막연히 그 규모가 증대되고 있다면서 국민이 볼 때 납득되지 않는 막대한 복지가 다문화 가족에게 지원되고 있다는 우려이다. 그러나 한국인 취약 가족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장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의견은 이와 다르다. 현장 사회복지사들은 ‘한국인과의 역차별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정도로 다문화가족은 사회, 경제,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서비스를 축소하고 일반 취약계층 아동의 지원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는 발상은 부적절하다(박미화·김솔 2018: 147)’고 밝히고 있다. 가족 구조가 온전하고 기능면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가족의 범주에서 벗어

난 빈곤 다문화 가족이나 한부모 다문화 가족의 경우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처해있음에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부터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막대한 다문화 예산 중 한국인 고용창출을 위한 종사자의 인건비로 얼마나 지출되고 있으며, 시설마련이나 인프라 구축등의 비용으로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 다문화 지원 액수만으로 국민 역차별론을 주장하며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는 것은 맥락을 무시한, 일본의 외국인혐오단체 주장과 별 차이가 없다.

2019년 6월 19일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역시 “외국인 노동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무임승차 비난 발언을 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은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율을 19%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1.9%까지 포함한다면 매월 급여에서 20.9%가 원천징수되는 것이다. 더욱이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은 외국인에게는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어서 사실상 같은 급여를 받는 한국인 노동자보다 외국인 노동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고 볼 수 있다. 세금과 관련된 외국인의 비과세 문제는 노동시장의 하층에 위치한 비OECD 국가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되는 부유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혜택이 관건이다.

물론 무임승차에 대한 갈등은 외국인에게만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청회에서 젊은 정규직 노동자들은 ‘결과의 평등 NO, 기회의 평등 YES’라는 손 피켓을 들고 정규직화를 반대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청년 정규직 노동자들도 ‘합리적인 차이 없는 무기직 일반직화를 반대’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지하철 곳곳에 반대 포스터를 붙이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공정한 공개채용을 부정한다고 비난했다.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근로 조건과 임금차별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주민에게 차등한 권리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공정한 규칙이라고 주장한다. 대학입시에서의 농어촌 지역 학생에 대한 특별전형과 다문화가족, 탈북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조치에 반대하고 이들 동료학생에 대해 혐오 언어인 ~충을 붙이며 조롱과 멸시를 보내는 것도 무임승차자라는 이유에서이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편견이 강화되고 있는 이유를 경쟁사회가 초래한 능력주의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한다. 이기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가치관을 강요받고 살아남기 위해 자기 계발서 등을 통독하며 발버둥 쳐 온 세대에게 있어서 조건의 평등을 위한 자원 배분은 공정성을 해치는 불공정의 요소이며 나의 능력 발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장기간 근무하며 숙련도와 전문성을 익힌 비정규직 노동자가 시험을 거치지 않고 비정규직노동자로의 전환되는 것에 대해 공정한 룰을 어긴 것으로 여겨

분노하는 것처럼, 시민권없는 난민, 이주민이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는 받는다는 것 자체가 공정한 룰을 어긴 무임승차로 간주된다. 불평등한 경제구조의 모순을 눈감아 버리고, 위계적 노동서열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더 하층에 배치된 계층을 무시하고 차별함으로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하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경쟁과 불안, 집단적 우울을 극복해 가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외국인 혐오 담론 - 민족정체성론

외국인을 혐오하는 세 번째 핵심 논거는 한국 고유의 순혈성, 민족적 동질성에 대항하는 이질적 타자의 등장으로 인한 불안이다. 앤더슨은 민족주의를 근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생겨난 역사적 구성물로 간주한다. 민족은 특정한 시기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구성되고 의미가 부여된 상상의 공동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민족 개념은 영속주의 관점에 가깝다. 민족은 운명공동체로 씨족이나 종족에서 출발하여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존속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특히 민족개념은 식민지와 분단의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내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공고화되면서, 초역사적이고 보편적 실체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영속주의적 민족주의는 통일 한국과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을 지향하는 민족주의와 세계화시대 다문화주의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과 다문화주의로 인해 다양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민족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초중등 교과과정을 통해 단일민족이란 동질성을 교육받고, 순혈주의를 자랑스러운 민족 정체성으로 인식해온 한국인에게 있어서 과도한 해석은 아니다.

외교부의 재외동포재단법은 동포에 대한 개념을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 살에 미국에 건너가 아시아계 최초 슈퍼볼 MVP 스타가 된 하인즈 워드 선수에 대한 열광도 한민족이란 우수한 혈통이 일궈낸 성공에 대한 자부심에서였다. 혈통에 근거한 민족 개념은 한국인을 형성하는 핵심 이데올로기 중 하나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어떤 외국인보다 같은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중국동포에게 가장 부정적인 기호와 상징이 부여되고, 강력한 혐오의 수사가 따른다는 점이다. 국내 이주민 선호도 조사에 있어서도 조선족에 대한 혐오감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조선족은 동포도 같은 민족도 아닌 우리 국민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 “조선족을 추방시켜 달라”, “차이나타운 없애라”, “조선족의 의료보험을 폐지하라”는 등의 조선족에 대한 혐오 청원이 1,1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제7차 난민반대집회에서 한 발언자는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언제든지 중국동포와 중국인들은 반란군으로 돌변할 수 있다며 공동체의 적이자 공동체 내부에 숨어들어 온 위험한 타자임을 강조했다.

중국동포 혐오는 과거 10년간 우익보수주의자들이 형성한 국가주의의 결과물 중 하나라는 분석도 일면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보수는 왜 다문화주의를 선택했는가』라는 책의 저자 강미옥은 우익보수주의자들이 남북화해 통일을 지향하는 좌파를 무너트리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사회의 핵심 가치였던 민족 개념을 해체하고 대신 다문화주의를 채택했다고 주장한다. 우익보수주의자들에 의해 구축된 다문화주의는 이질적인 타자들에 대해 사회구조가 만들어내는 차별과 소외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치성을 배제하고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공화적 애국주의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한민족 대신 한국인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다는 주장인데, 뉴라이트의 대표적인 보수논객 신지호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자유주의에 기초해서 민족주의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민족주의를 버리고 세계주의와 국제주의를 주창할 경우 쟁점이 국가관, 애국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화주의적 애국이 필요합니다. 민족주의 없는 애국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다문화주의를 포용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와 결별한 애국으로 가야하는 거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민족을 넘어 세계로’란 슬로건을 통해 영웅적인 한국인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가는 다문화관련 스토리를 써 나갔고 우월한 한국인과 우수한 K-POP 문화라는 국가주의가 한민족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그 결과 중국동포에 대한 민족적 동질성은 지워지고 그 자리에 이등시민으로서의 중국동포만 위치하게 되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박노자는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원인을 고질적 인종주의에 상응하는 경제인종주의, 혹은 GDP 인종주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경제본위로 이루어지는 차별이 저개발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집단화하며 무시하고 배제하여 계층화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노동시장을 피부색에 따라 위계적인 계급구조로 관리한 인종주의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인종차별은 인종이라는 정태적 실체를 규명하기 보다는 인종화라는 지속적 과정을 통해 민족적, 지역적, 종교적, 계급적인 다양한 고정관념들로 끊임없이 재구성한다. 인종화는 신체적 특징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담론적, 문화적 과정(김현미, 2018, 2)이며 그 속에 조선족이 위치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노동위계 ; 고용주에게 위임된 신체

1987년 한국은 민주화운동으로 분출된 노동자 대투쟁으로 인해 노동자의 권리가

향상된 한편, 산업구조 개편으로 노동집약적 산업과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의 이중구조가 고착되었다. 소위 3D 업종이라 일컫는 노동집약적 산업들은 더 싼 임금을 찾아 공장을 해외로 이전했고, 해외로 이전할 수 없는 더 영세한 업체들은 아시아의 저개발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변화된 노동환경과 요구되는 외국인 노동자 수요에 대해 진지하게 분석하고, 신속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6개월간의 체류자격을 허가하는 대신,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모든 통제권한을 부여했다. 외국인노동자의 신체를 노동법의 보호아래 두지 않고 사업주의 자비심과 이기심에 위탁한 것이다. 이를 악용한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하거나 하루 14-16시간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했고, 안전장치가 없는 낙후된 기계를 교체하는 대신 외국인노동자에게 작동하게 했다. 이직을 희망하면 강제출국으로 엄포를 놓았다. 국가로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삶 전체를 통제할 있는 권리, 즉 머무르게 할 권리와 추방할 권리를 위임 받은 사업주는 외국인노동자의 도주를 막는다는 이유로 여권을 압류하고, 고향친구들과의 접촉을 차단했으며 이발하기 위해 외출을 해야 할 때도 한국인 감시자가 따라다녔다. 고용을 보증 받는 대가로 사업주의 처분에 모든 권리를 위임했으므로 외국인 노동자의 삶은 전적으로 한국인 사업주와 한국인들에 의해 관리되었다. 생명권을 보장받는 대신 모든 권한을 절대군주에게 위임한 흡스식의 사회계약론과 다를 바 없었다.

노동시장의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국가는 외국인노동자 도입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야만 했다. 보다 공적인 틀 안에서 제도화되고 조직적인 일자리 위계 정책이 필요했다. 출입국관리법령에 있었던 “산업기술연수”의 체류자격제도를 바탕으로 급조한 산업연수제도는 외국인 노동자의 모든 노동과 삶을 사업주가 통제하게 했던 과거 착취 방식 그대로를 따랐다. 최저임금은 적용되지 않았고 산업재해 시 치료와 보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여전히 여권과 통장이 압류되었고, 외국인노동자는 권력자인 한국인 고용주가 요구하는 노동시간과 생산조건들을 감당해야 했다. 사고가 속출했고 야밤을 틈타 도주하는 노동자들도 부지기수였다. 20세기 문명의 시대 자유로운 이동과 언론 출판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야반도주라니 가당하거나 한 말인가? 급기야 흑한의 추위가 몰아치는 한겨울 몸에 쇠사슬을 감고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라고 부르짖으며 농성을 했지만 그들의 삶은 노예와 다를 바 없었다. 생산관계 이외의 모든 삶까지 사업주나 혹은 그와 동류의식을 갖는 한국인에게 위탁되었으니 어떻게 노예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산업연수제도는 1994년부터 악명을 떨치면서 유지되다가 2007년에 폐지되었다. 이후 인권과 노동권을 향상시켰다는 고용허가제가 제정되어 송출비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입국을 보증하였지만 노동자를 처우하는 방식은 산업연수제도의 원형을 벗어나지 못했다.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고 사업

주에게 모든 권한이 위임되는 기존의 권력구조는 그대로 승계되었다. 노동과 삶에 대한 모든 통제권 아래서는 몸이 아파서 쉬어야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고국을 방문해야 하는 일들은 허락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6,617명, 2018년 7,061명이 산업현장에서 부상을 당했고, 2017년 90명, 2018년에는 114명이 목숨을 잃었다. 근골격계 질병이라든지 유기화학 용제로 인한 만성 질병은 산업재해로 잘 인정되지 않았고, 만성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도 고용주의 동의 없이는 작업장을 이동할 자유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사업주가 현저하게 노동법을 어길 경우에만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작업장을 이동할 수 있으니 로크의 저항권 정도는 보장된 계약이다.

농·축수산 및 어업 부문에서 노동하는 외국인노동자는 더욱 심한 예측상태에 놓여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축수산 및 어업 등의 노동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농축수산 및 어업 노동자들의 장시간, 저임금, 강제노동을 묵인 방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축수산업·어업은 시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후에 영향을 때문에 이른 아침에 일하고, 한낮 뒤흠에서는 그늘에서 쉬며, 농한기에는 한가로이 지내는 시간이 많다는 전근대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근로기준법 제63조이다. 이 법 조항 때문에 뒤흠에도 근무시간을 채워야 했던 베트남 노동자가 담배 밭에서 폭염으로 사망했고(2018년), 농한기에는 불법파견으로 사업주의 가사(家事)나 마을 잡일에 동원되는 등 가노(家奴)나 마을 노비로 전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 법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와 같이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노동자를 노동시장에 필요한 도구로 간주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느끼는 아프고, 고단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약한 감정은 고려되거나 반영되지 않는다.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는 과로와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네팔 노동자만 2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호소했으나 묵살 당했다.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참고 일을 하거나 선택은 둘 중 하나밖에 없었다.

노동시장을 위계적으로 계층화하여 관리하는 한국의 외국인력 제도는 중국인이나 방글라데시, 네팔, 필리핀 등의 사람들이 열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간주한다. 피부색이나 인종과 같은 신체적 특징으로 종의 우열을 가르치 않는다 하더라도 일상과 노동을 통제하고 관리하며, 억압과 착취를 정당화한다면 과거 인종주의와 다를 바 없는 세계화된 신자유주의 시대에 탄생한 변종 인종주의인 것이다. 외국인노동자가 유입된 이래 자본과 국가는 노동시장을 서열화, 타자화, 인종화하며, 외국인노동자들을 뭣 없는 자, 권리 없는 자로 인식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한동안 중국동포도 외국인노동자와 똑 같이 위계적인 노동시장의 하층계급을 담당했다. 그러나 중국동포들은 노동시장에 부여된 위계적 질서를 거부하고 재외동포로 인

정받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집회와 농성을 반복했으며, 급기야 헌법소원을 통해 재외동포법의 '동포' 지위를 획득했다.

과거 중국동포들은 한국인 사업주, 동료, 이웃의 감언이설에 속아 금품 사기를 당하고, 노동현장에서 빈번한 임금체불, 산업재해, 폭언·폭행의 피해를 당해도 항변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재외동포의 지위를 획득하고 난 후에는 한국인 노동자와 유사한 법적 권리를 갖게 되었다. 직장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만둘 수도 있게 되었으며, 제한 없는 중국왕래가 보장되고,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는 여행사, 식당, 요양방문센터, 무역회사 등을 설립하는 등 한국인들과의 경쟁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인이 주도하는 중국동포교회나 센터에서 대상화되거나 동원화, 도구화되는 것에서 벗어나 중국동포 경제인 모임, 중국동포 예술인 모임, 지역 봉사활동단체, 중국동포 NGO 등 독립적인 단체를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다. 특히 중국동포 밀집지역인 서울 서남권의 기초자치단체나 외국인출입국 정책본부 등의 정부기관과 거버넌스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재한중국동포유권자연맹'을 조직하여 정치세력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13만 명의 중국동포들 중 약 10만 명이 구로구와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의 중국동포 정치세력화는 무시할 수 없는 힘으로 성장하고 있다.

재외동포로의 인정은 위계화된 노동시장 구조에 균열을 일으켰다. 조선족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다 빼앗아간다는 불만이 증폭되었고 세계 노동자의 단결을 외치는 노조에서마저 외국인 고용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비합법 체류자에 대한 대응 방안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더 큰 불안은 통제받지 않는 자유로운 신체에 대한 불안이다. 그동안 외국인의 신체에 각인된 불법성, 예를 들어, 한국인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업장 이동 같은 행위가 외국인노동자에게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경미한 법 위반 사항에도 강제 출국시킬 수 있었던 억압과 통제 장치들이 중국동포들에게는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생산과 관련된 것은 물론 삶 자체가 하층에 배치되도록 강제되었던 중국동포들이 한국인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신체를 가진 존재로 발전했고, 생득적 약자성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저임금에 순응했던 중국동포들이 더 나은 임금을 준다고 하면 수시로 작업장을 이동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팀을 구성해 공사 하청을 받아 운영하는 등 산업현장의 소모품이 아니라 생산에 참여하며, 생산의 주체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한국인과의 말다툼이나 주먹다짐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강제추방이 두려워 절대적 인내심을 발휘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 함께 맞붙어 싸우거나 경찰에 신고, 혹은 사업장을 옮기는 방법 등으로 저항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종적으로 위계화된 노동시장의 하위 계층 몫을 담당해야 한다고 여겨졌던 중국동포가 점차 공론의 장에서 자기 발언, 동등한 시민적 주체로 성장하게 되자 분노와 저

향이 폭발된 것이다. 경제적 경쟁관계에서 밀려난 한국인 비숙련노동자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었고 혐오와 증오는 국민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인종적 하위 계층에 배치되었던 중국동포의 격상에 대한 분노는 난민과 함께 혐오의 대상으로 끌어올렸다. 반면 여전히 인종적 노동위계의 하위층위에 머물면서 한국인 고용주의 통제를 받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신고·단속·추방의 국가 억압 메커니즘

신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외국인 집단 전체에 대해 인종적 낙인을 고착시킨 대표적인 제도는 신고·단속·추방 세 가지의 통제와 억압 시스템이다. 비합법 체류자에 대한 신고제도는 외국인을 전 국민의 감시 체제 아래 배치함으로써 인종적 위계를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한다. 특히 국민에게 비합법 체류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외국인의 삶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악용하여 지나가는 비합법 체류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며 돈을 갈취한 사례나, 중국동포 일가족이 번 돈 전부를 빌린 후 불법체류자로 신고한 사건 혹은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한국 연인이 외국인 동거인을 신고한 사건 등은 신고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인 사이에 각인된 위계적 관계는 3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외국인들은 국가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한국인 사업주나 한국인 동료, 한국인 이웃에게까지 일상적 감시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이런 메커니즘은 지난 난민집회의 구호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됐다. “난민을 받아들일 것인가는 한국인이 결정한다. 당신들은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구호였다. 비합법 노동자를 머무르게 하거나 추방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사업주에게 주어졌듯 이제 난민에 대해서도 머무르게 하거나 추방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다. 외국인의 개별적 신체에 국민의 권력이 작동하도록 설계된 외국인력 정책 기조의 영향이다.

국제난민협약은 고통에 처한 타자에 대한 환대의 정신이다. 난민수용 여부는 타자의 고통과 호소에 달려 있는 것이지 주체의 결정에 달려 있는 문제가 아니다.

2018년 겨울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비는 경인전철 승강장 전광판에는 약 10분에 한번씩 “불법체류 외국인 발견 즉시 법무부 출입국에 신고(T 1588-7191)”라는 전광판 문구 안내 글이 송출되었다. 승강장에 있던 한 스리랑카 노동자는 이 문구를 본 후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면서 앞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두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러한 공공연한 신고 안내는 한국인에게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의심하고 경계하고 또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일깨워준다.

2016년 한 택시운전사가 남부터미널 근처에 아랍 계통의 외국인이 가방을 메고 가는데 테러가 의심된다고 신고하여 관할 강력계 형사팀, 경비과, 파출소 직원, 타격대가 투입된 해프닝은 아랍 계통의 사람이라는 인종적 낙인찍기의 결과였다. 아랍계통의 외국인이라는...아랍계통의 외국인이라는 낙인에는 인종, 문화, 종교, 종족과 같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 이러한 특징은 열등함과 위험성을 가진 존재로 위치지어지며 증오와 혐오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사용된다.

신고제도는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제도 차원에서도 작동되었다. 정부 부처 간 통보의무가 그것이다. 통보의 의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자를 발견하는 즉시 출입관리소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말한다. 장기간 월급을 받지 못해 노동부를 찾아간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노동부 직원의 신고로 출입국관리소로 넘겨졌고, 친구의 싸움 경위를 설명하고 경찰을 위해 통역을 도와준 참고인 몽골 고등학생도 경찰에 의해 외국인보호소로 이첩되었으며, 한국에 온 후 돈도 없고 배가 고파서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요청한 에티오피아 사람도 경찰에 의해 출입국관리소로 인계되었다. 후에 에티오피아인은 보호소에 난민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이 임금체불, 산재, 사기, 강도, 등 온갖 종류의 피해를 입고도 공적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건 이런 통보의무 규정 때문이다. 그 어떤 인권침해나 피해보다 국가가 제공하는 체류권이 더 큰 권력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부처 간 통보의무는 불법체류자의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권리 없는 자의 원형이다. 비합법자의 체류권이 노동자로서의 법적 보호나 형사사건의 피해자의 지위보다 상위에 배치되고 다른 모든 권리는 무용한 것으로 만든다. 법은 존재하지만 법 밖에 있는, 벌거벗은 삶 호모 사케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통보의무는 인권보장이라는 보편적인 법의 원리보다 출입국 관리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우선시하는 규정으로 외국인의 인권 침해 시에는 통보의 의무를 정지하도록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권고를 받은 수 년 이후 경찰청은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으로 살인, 폭행, 협박, 학대, 감금, 유인 절도, 강간, 강제추행, 사기, 공갈, 성매매 알선, 성폭력, 교통사고, 직업안정법 피해자에 한해서는 통보의무에서 제외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과거 공권력의 냉혹한 처벌을 경험한 비합법 체류자들은 공적인 호소보다 개인적 희생을 감수한다. 일선 경찰관 역시 변화된 제도를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인권침해문제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단속

비합법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이동성이 높은 모든 국가에서 곤욕을 치르는 문제이다.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에 의하면 지난 2018년 평창

올림픽 이후 미등록 외국인의 체류가 39만 명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이중 태국인(13만 8,591명), 중국인(7만 1,070명), 베트남인(4만 2,056명)의 비율이 전체 미등록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2년 만에 42%가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비합법 체류자의 증가 원인과 입국관리 방식의 문제에 대한 검토나 분석 없이 비합법 체류자의 수를 전체 외국인의 10% 미만으로 조절하겠다고 발표하고,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공포했다. 합동단속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일자리 경쟁이 우려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인종적 위계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수백 명의 경찰이 공장지대 외곽을 둘러싸고 일부는 건물 내부로 일부는 밖으로 도망쳐 나오는 외국인을 검거하는 소위 토끼몰이식 단속을 시행했으며, 거주지를 파악한 후 한밤중에 침입해 연행하고 전기충격기를 쓰는 등 단속의 방법은 짐승을 몰거나 잡을 때 사용하는 방법과 유사했다. 단속과정에서의 피해도 속출했다. 비합법 체류자의 강도 높은 저항과 위협에 찬 탈출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때로 목숨마저 잃는 비극적인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단속과정에서 출입국관리소 직원에 의한 폭행, 10시간이 넘는 수감 착용, 성적수치심 유발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빈번한 진정 내용이다. 엄청난 비난에 의해 그물 총 사용은 폐지되었지만, 단속의 방법은 여전히 야만적이다. 비합법 체류자의 강제추방은 경제적 살인이라고 볼 수 있다. 고국의 수많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생존의 박탈일 수 있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꿈을 이룰 유일한 수단에 대한 상실일 수 있으며 사랑하는 한국/비한국 연인과의 영원한 이별의 과정일 수도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 형성한 경제적 토대와 사회적 관계망이 한순간에 붕괴되는 일기기에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단속은 국가 폭력과 다르지 않다.

불심검문에는 인종적 낙인화가 그대로 반영된다. 2018년 7월 진주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친구가 일하는 건설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대학원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몸을 제압한 채 승합차로 끌고 갔는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주민들이 무차별 폭행에 항의하자 “우리는 얼굴만 봐도 불법체류자인지 안다”라는 영상 방송에 보도되었다.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피부색과 외모만 보고 납치하듯 끌고 가 차량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이 있으면 풀어주고, 없으면 연행하는 방식은 단속 초기부터 지금까지 변함 없이 실시되고 있는 방법이다. 다만 지금은 CCTV나 동영상이 촬영되면서 폭력적인 단속 과정이 유포되며 그 심각성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단속은 기본권과 인권침해를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국에서 일구어 온 삶 자체를 박탈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합법 체류자의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사업주를 압박함으로써 고용자체를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 비합법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면 당연히 비합법 체류자의 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방책은 주로 고용주를 대상

으로 하기보다 외국인노동자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고용허가제 계약종료 이후 잔류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퇴직한 날로 14일 이내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어기면서까지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미등록자를 많이 배출한 국가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쿼터를 줄여 해당국가가 자국민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한국인 고용주의 처벌이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미미하다면 결코 비합법 체류자 수를 줄일 수 없다.

건설현장의 경우 외국인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나 사업주들은 외국인 고용을 선호한다. 노무비 절감 효과 때문이다. 외국인노동자는 기능이 부족하지만, 나이가 젊고 임금이 적어서 채산성 지수가 한국인에 비해 100 : 107.4로 높다고 한다. 하도급자가 저가 입찰했을 때 공사비 절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안은 저임금 고용이다. 만일 고질적인 3-4차 하도급 구조와 이로 인한 노무비 하락의 틀을 깨지 못한다면 아무리 단속을 하거나 규제 장치를 갖춘다하더라도 비합법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을 막지 못한다. 독일의 경우 노동조합이 나서서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도 임금덤핑으로 인한 외국인 고용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내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산업구조의 고질적인 문제를 방치한 채 단속으로 비합법 체류자의 삶 자체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방식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단속은 현행법상 범죄자가 아닌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유일한 제도이다. 형사절차에는 억압적 인신구속을 예방하기 위해 영장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만, 행정사범인 비합법 체류자에게는 사법절차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단속을 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를 일회용 기계처럼 사용하고, 폐기처분하듯 자국으로 쫓아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귀국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의 연계성을 확장시키고, ODA 사업과 연계하여 본국에서의 창업을 지원하며, 지속적 기술협력지원을 통해 자신들의 공동체 성원과 함께 자립할 수 있는 풀뿌리 경제연대를 만들어가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주의 현상은 한국에서의 문제와 갈등, 효과와 이익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주와 귀환의 선순환관계, 지구적 공생관계를 모색하며 풀어야 하는 것이 세계경제 공동체 구성원들의 과제이다.

추방

한국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를 은폐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추방이다. 비합법 체류자를 둘러싼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숙의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보다 당사자를 추방시키는 것이 훨씬 무리 없는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폭력적인 방법이다. 인권침해가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늘 신속하게 추방시킴으로 사건을 종결지으려 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비합법 체류자의 인권침해를 인지했을 경

우 가장 먼저 출국 정지를 명령하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추방을 기다리는 동안 머물러야 하는 외국인보호소 내에서의 인권침해는 더욱 심각하다. 직원들의 폭언, 폭행, 장기간 보호/구금, 보호소 내에서의 이동의 자유, 집필권 보장, 화장실을 비추는 CCTV, 적정인원 수용, 징벌적 독거수용, 자국어로 이해할 수 있는 생활수칙 제공, 공휴일 면회, 운동시간 보장,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끊임없이 요구한 개선 사항들이다. 그러나 10년이 넘도록 개선된 내용은 거의 없다.

2007년 2월, 10명의 사망자와 17명의 부상자를 낸 여수출입국관리소 보호실에서 화재사건은 그동안 국가가 외국인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외국인 보호소는 명칭 그대로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돕는 일종의 출국 대기 장소이다. 정산되지 못한 월급이나 전세 보증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본국과도 자유롭게 연락을 취하여 귀국 후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자유롭게 책도 읽고, 운동도 하며, 함께 보호된 가족이 있다면 자유로운 면담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 보호시설은 일반 재소자 구금 시설과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자유권을 제약하고 있다. 외국인 보호소의 운영과 시설은 비합법 체류자가 행정사범임에도 불구하고 주권성에 도전한 중범죄자임을 자각시켜주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3,4중으로 설치된 철문에 갇혀, 보호된 가족과도 연락을 취할 수 없으며, 보호소 운영에 조금이라도 항의하는 사람은 건물 끝 음습한 징벌방인 특별계호실로 보내진다. 밀린 임금이나 해결해야 할 금품문제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수준이다. 보호소에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구금생활에 지쳐 모든 걸 포기하고 귀국하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도 월급을 받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된 것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었다. 화재 발생 후에도 직원들은 외국인들의 안전을 위한 긴급 대피보다는 달아날 것을 염려해 잠긴 철문을 열지 않고 소화기로 대처하려 했다가 참사를 낳았다. 사람보다는 통제가 더 중요했던 것이다. 고액의 채무 피해자, 산재로 인한 부상자, 난민신청자 등 인권 침해, 보호가 필요한 사람도 장기간 구금되어 있다. 인신을 구속하는 법적 심사가 없기 때문이다. 2019년 5월 외국인보호소에 2개월 이상 수감되어 있는 사람은 40명에 달했다.

보호소는 법의 부재가 아니라 법의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 의미 없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곳이다. 그래서 법은 갇힌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법은 그냥 방치하다가, 지쳐 떨어져 한국 밖으로 나가도록 내버려두는 역할만 할 뿐이다. 그저 국민의 인종적 하층에 배치된 타자로만 다루고 있다.

마치며...

예멘난민 입국 이후 외국인에 대한 혐오발언이 공공연하고 노골적으로 발화되고 있다. 그동안 인터넷 상에서 외국인 혐오가 유포되었다면 이제는 왜곡되고 가공된 정보를 진실처럼 가장하여, 공적인 공간에서 혹은 SNS를 통해서 안전, 국민, 민족 정체성을 이유로 혐오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들은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이며,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항변한다. 어쩌면 난민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해서 집회에 참석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 원인에 주목해야 한다. 국민 우선이라든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수자의 억압을 묵인하는 것을 당연시했을 때 인류가 어떤 비극을 저지를 수 있는지 역사적인 사건으로 목격했기 때문이다.

혐오는 감정에서 출발하여 하나의 신념으로 확장하는 특징을 가진다. 사적인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다가 점차 동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신념 체계로 발전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에 근거하거나 진리에 주목하지도 않게 되고, 혐오 대상의 속성을 비난, 비판하고, 폄하, 공격하며 속성의 차이를 본질의 차이로 왜곡하고 차별과 공격을 정당화한다. 더 나아가 상호 공감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불관용과 몰이성이 자리 잡게 된다.

범죄 사회학자 브라이언 레빈은 혐오가 표현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실제 행동으로 직결 되고 있는지 혐오의 피라미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특정한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편견) → 조롱, 위협적, 모욕적, 폭력적 말과 행동의 (혐오 표현) → 고용, 서비스, 교육 등의 영역에서 차별, 배제, 분리와 같은 (차별적 행동) → 편견에 기초한 폭행, 협박, 강간, 방화, 테러, 기물 파손의 (증오 범죄) → 의도적 조직적 말살을 일으키는 (집단 학살)로 발전할 수 있는지 그 위험을 말해준다.

외국인의 노동권과 자율권, 행복추구권이 한국인에게 예속될 수 있도록 설계된 차별적 정책이나 공적인 공간에서도 조롱과 모욕 폭력적인 말과 행동이 이루어지는 한국은 혐오 사다리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 사소하고 일상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이 국가의 정책이나 이데올로기와 만날 때 혐오는 견잡을 수 없는 힘을 발휘하게 되며, 여기에 극우 정치인이나 언론이 가세하게 된다면 한국사회는 곧 몰이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기 십상이다. 새로운 만남을 준비할 통일 한국의 미래와 이웃 공동체와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혐오의 사다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참고문헌〉

- 강미옥, 『보수는 왜 다문화를 선택했는가』, 상상너머, 2010.
- 김동문, 「논쟁: 이슬람 포비아, 조장인가 실체인가」, 『진보평론』, 제67권, 2015, 358-384.
- 김종갑, 『혐오』, 은행나무, 2017.
- 모로오카 야스코, 조승미 이해진 옮김, 『증오하는 입』, 오월의 봄, 2015.
- 박노자, 『주식회사 대한민국』, 한겨레출판, 2016.
- 박미화·김솔, 「온라인 뉴스 댓글 분석을 통해 본 한국 사회의 중국동포 혐오증: 오원춘 사건 보도 전후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2018, 93-116.
- 심양섭·김지영, 「국내 다문화 혐오증의 원인과 극복방안」, 『다문화와 디아스포라 연구』, 제 8호, 2016, 1-31.
- 세일라 벤하비브, 이상훈 옮김, 『타자의 권리』, 2008
- 야스다 고이치, 김현욱 옮김, 『거리로 나온 넋우익』, 후마니타스, 2013.
- 유서연, 『공포의 철학』, 동녘, 2017.
- 제레미 워드론, 『혐오표현』, 홍성수, 이소영 옮김, 이후, 2017.
- 캐롤린 엠케, 정지인 옮김, 『혐오사회』, 다산초당, 2016.
-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어크로스, 2018.

젠더와 이주 그리고 차별

문현아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젠더와 이주 그리고 차별

문현아(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책임연구원)

2021년 다가치 포럼: 차별과 혐오
2021.5.21.(금)

오늘 논의의 주요 주제

- I. 국제 이주 현황
- II. 한국사회의 이주 특징
- III. 글로벌 이주민 차별의 현황과 진단

I. 국제이주 현황

출처: <http://metrocosm.com/global-immigration-map/>

- 국제이주민의 74%가 20-64세 연령대에 분포
- 전체 지구 인구 77억명 대비로 고려하면 30명 중 한 명이 이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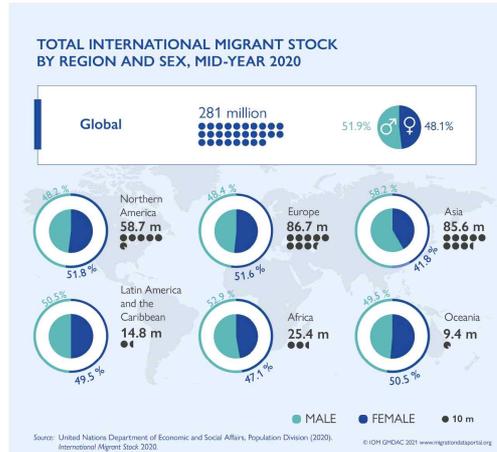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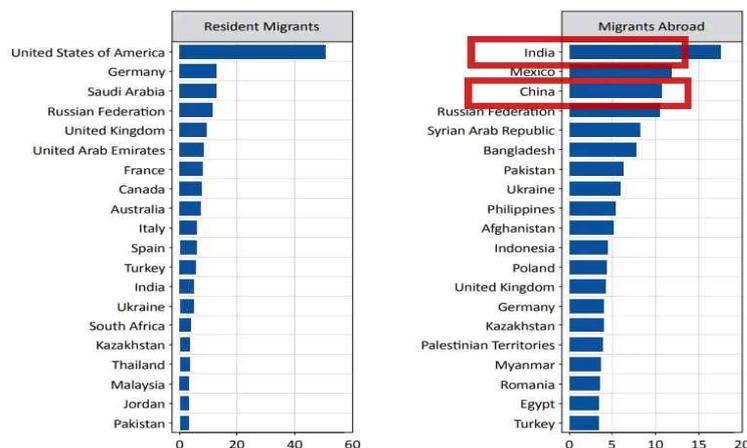


Figure 3. Top 20 destinations (left) and origins (right) of international migrants in 2019 (millions)



출처: <https://www.weforum.org/agenda/2020/01/global-migration-report-international-migrants-2020/>

한국?
아시아?

이주의 글로벌 맥락

- 왜 이주하는가?
- 국경을 넘는다는 의미?
- 글로벌 정치경제 - 이주의 시대
- 글로벌 재생산 회로 - 돌봄의 순환
- 경제 흐름과 국경
- : 정치적 재국민국가중심주의화 vs. 경제적 탈국민국가중심화
- 단기/장기 : 시간적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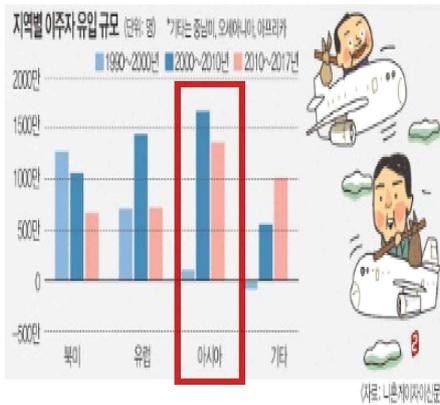


국가 간의 관계



- 송출국/유입국의 입장
- 추진 요인/ 흡인 요인
- 합법/불법 경계의 유동성

II. 한국사회의 이주 특징



- 아시아 지역내의 이주 강세
- (에스닉) 귀환 이주, 특히 중국동포 이주의 큰 규모
- 인구대비 디아스포라 인구 규모가 큰 편
한국(9.5%), 중국(3.6%), 인도(2.3%), 일본(2.8%) (Tsuda, 2019).



한국 결혼이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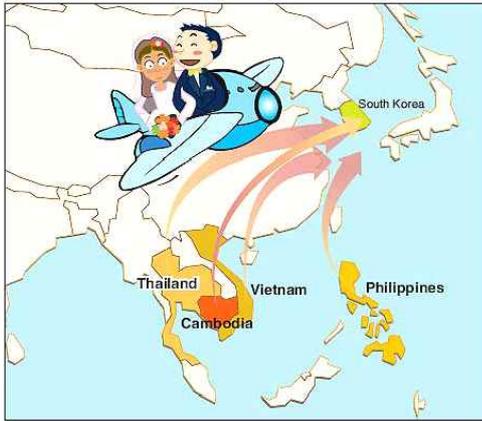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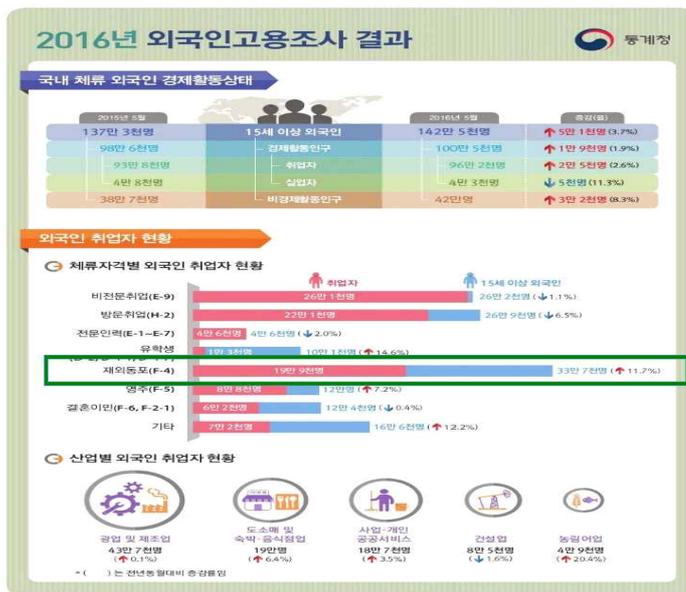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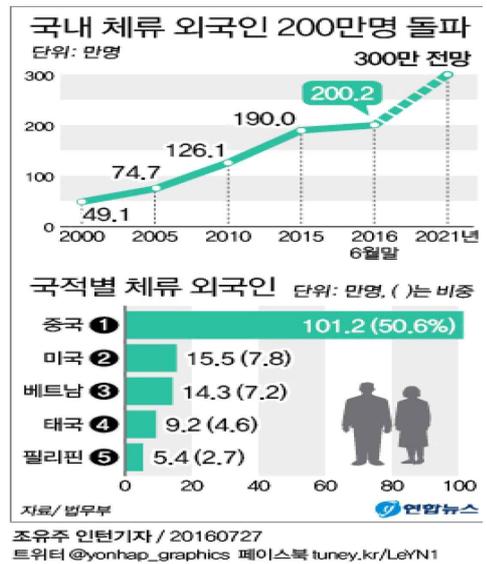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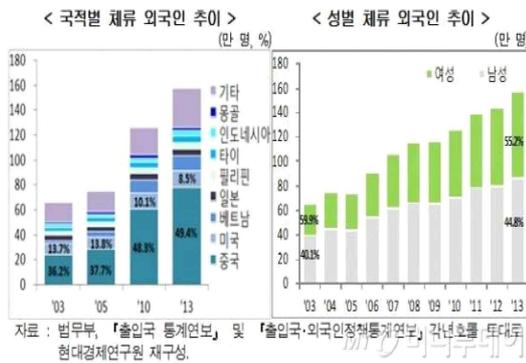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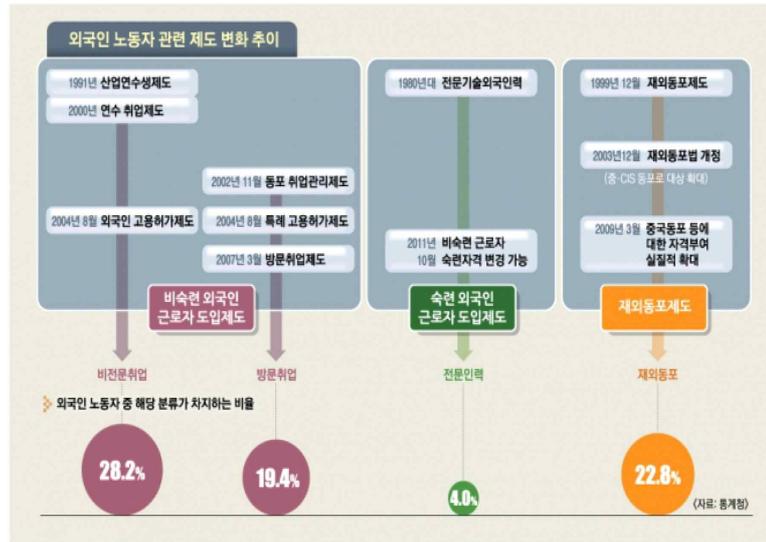


표 2. 국·지역·성별 현황 (2017.12.31. 현재 기준)

구분	총계	남자	여자	남자비율	여자비율	국·지역별 구성비율
총 계	140,496	20,750	127,510	14.7%	85.3%	100%
중 국	43,235	11,615	31,220	26.9%	73.1%	42.4%
태 국	39,352	284	39,068	0.7%	99.3%	28.0%
일본	11,724	1,129	10,617	9.6%	90.4%	8.4%
필리핀	9,611	777	8,834	8.1%	91.9%	6.6%
캄보디아	6,541	6	6,535	0.1%	99.9%	4.7%
미 국	2,050	2,025	25	98.8%	0.2%	1.5%
타 이	2,818	50	2,768	1.8%	98.2%	2.0%
몽골	2,074	49	2,025	2.4%	97.6%	1.5%
우즈베키스탄	2,017	50	1,967	2.5%	97.5%	1.4%
러시아	1,298	78	1,220	6.0%	94.0%	0.9%
캐나다	1,240	1,230	10	99.2%	0.8%	0.9%
베트남	1,027	147	880	14.3%	85.7%	0.7%
파키스탄	787	727	60	92.4%	7.6%	0.5%
기타	5,148	5,038	110	97.9%	2.1%	3.7%





한국내 이주 관련 통계의 현황

- 기본 통계의 부재
 - : 이주 범주/특징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움.
 - : 나라별 범주에서도 동포/외국인 구별 어려움
 - : 여성은 결혼이주, 남성은 노동이주라는 구도 속에 범주별 젠더 고려 통계치 찾기 어려움
 - : 부처별 상이한 통계자료(통계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등)

용어/개념에서의 혼란의 의미: 차별

- 외국인, 동포, 귀화허가자(?), 국적회복자(취득자), 이민자: 범주와 구분의 자의성.
 - “이민자란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통칭하는 용어”(통계청 자료, 2020년)
 - “귀화허가자”는 **외국인으로** 법무부로부터 한국으로 귀화를 허가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통계청 자료, 2018년)
 - “귀화허가자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었다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통계청 자료, 2020년)

민족, 에스닉에 대한 이해 부족

- '외국인근로자' / '이주노동자'
국제연합이나 국제노동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는 '외국인 근로자'보다 '이주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권고(강민주, 2019: 5).
- 소수민족, 에스닉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
-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해 부족
- 혈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한민족은 누구?

동포에 대한 두 갈래 관련법

- <재외동포재단법>
: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 생활하는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재외국민/외국국적 동포
: 재외국민은 개념적으로 동포와 다른 '국민'. (재외한인?)
: 외국국적동포는 국민이 아닌 '동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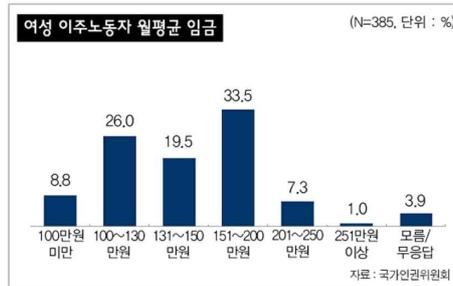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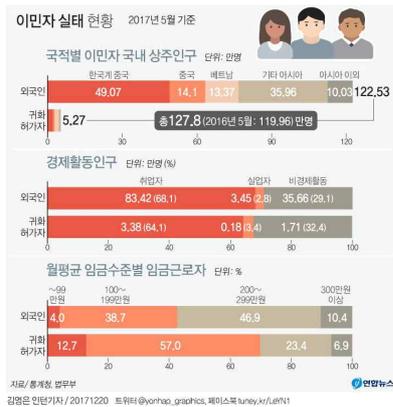
같은 '민족'(에스닉) 다른 '사람'?

- 고려인
- 조선족
- 재미동포
- 재일교포
- 재독한인
- 사할린(귀환)동포
- (해외)입양인
- 탈북인(새터민)
등등
- 니케이진(日系, Nikkeijin)
- 독일계 교포(Aussiedler)
- 인도인(Indo people, 네덜란드계 인도네시아계)
- 남미 원주민
- 호주 어보리진
- 캐나다 네이티브
등등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관점'

-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73/subview.do> <사회통합 정책>의 핵심
- <이민정책> 기조
- 사회통합 프로그램
 - 조기적응 프로그램
 -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 국경관리(출입국절차 간소화)
 - 외국인 신원확인
 - 밀입국 방지
 -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 자동출입국 심사
 - 출입국 우대카드 제도

임금 차별



<뉴스 기사의 관점이 보여주는 한국사회 이주노동자에 대한 시선>(201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31606619437208>



- 외국인 고용부담 커진 중소기업
- “중소기업들이 최근 외국인근로자 고용마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간 **저렴한 인건비**가 강점이었던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오르고, 여기에 숙식비 등 부대비용까지 더해져 **회사 수익성에 악영향**.”
- 내국인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근로자에** 동일한 임금을 주는 정책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 외국인 월평균 급여(숙식비 포함) 255만 4천원. 지난해보다 6.5% 상승. 내국인 267만 1천원의 95.6%에 달했다.

중국 동포 임금 차별 현황 (이창원, 최서리, 2016)

- 2015년 외국인고용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임금 근로자 시간당 임금
: 남성- 한국인 14,600원, 중국동포 9,800원
: 여성- 한국인 10,200원, 중국동포 7,500원

이주노동자 산재 발생율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강민주, 2019)

- 이주노동자 산재발생률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1.16%. 이는 국내노동자의 산재발생률에 비해 “6배 가량” 높은 것.
- 같은 업종에서도 이주노동자 산재발생률이 내국인에 비해 15-16배 높았다.
-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고 대다수 피해와 증상이 명백히 드러나는 업무상 사고로만 산재 승인
- 산업재해를 신고해도 산재 인정을 받기까지 어려움이 크고 재활치료 등의 장기적 치료 혜택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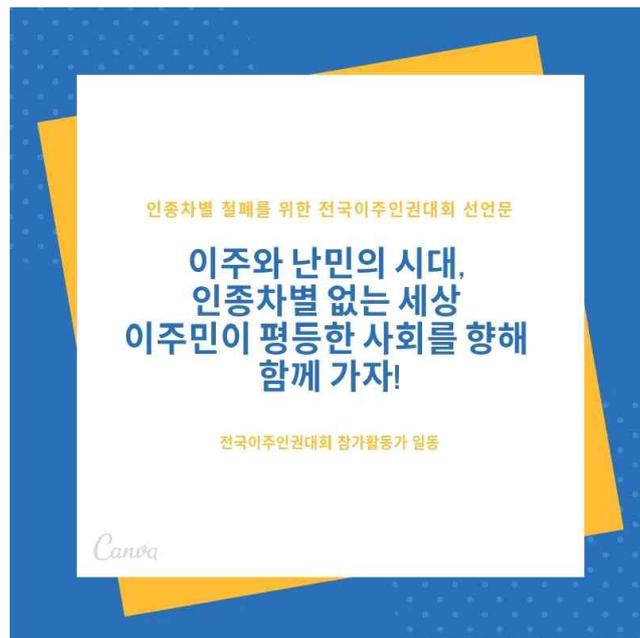


중장년 조선족 여성 이주 노동자 (이해음, 2014)



- 산재사고 성별분포에서 남성이 산재노동자수의 90%
- 몸 아픈 중장년 조선족 이주여성노동자의 현실이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
- 특히 남성보다 간병, 가사노동, 돌봄노동 등 비공식적 노동 분야에 종사해 공적 의료서비스 접근, 산업재해 통계에 비껴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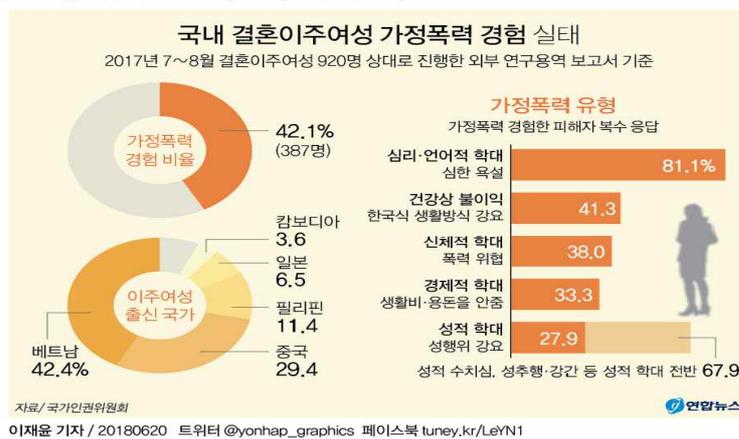
III. 글로벌 이주민 차별의 현황과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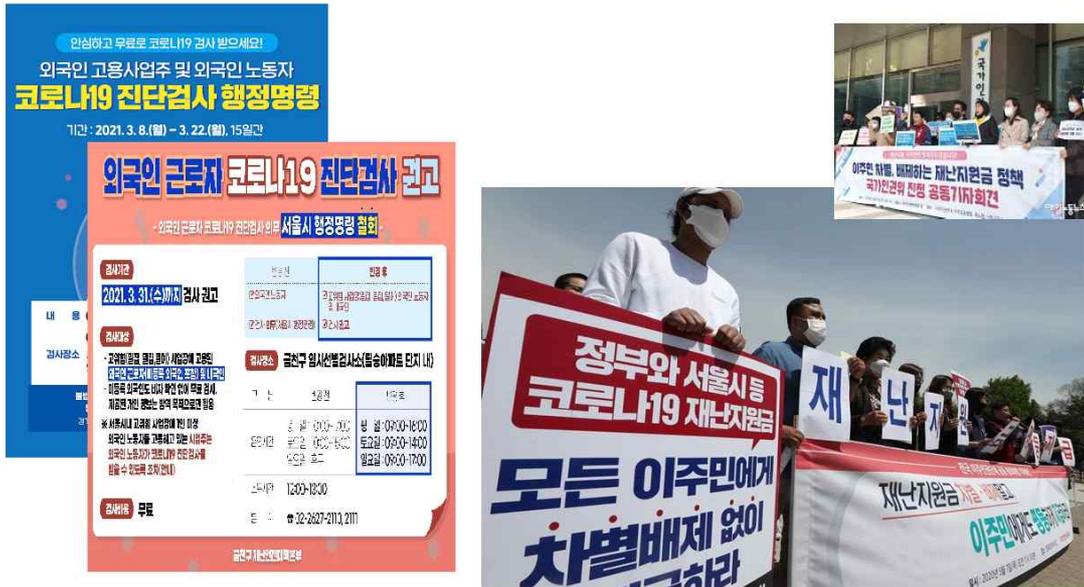


'차별'과 대안 모색



상대방은 누구인가?





卧虎藏龙
 주연: 양자경, 장진, 장지화

아카데미 3관왕 골든글로브
 최우수 감독상, 최우수 각본상, 최우수 여우주연상

WINNER! GOLDEN GLOBE AWARDS BEST DIRECTOR
 Chloé Zhao

NOMADLAND
 A FILM BY CHLOÉ ZHAO



이주민 차별의 요소: “통합”의 영역

- 언어
- 교육
- 건강
- 고용 보장 (임금, 노동시장 접근성), 고용 안정
- 주거
- 정치적 권리
- 가족 (재)결합 권리 보장
- [일상]
- 귀화(허가?), 국적취득
- ‘평등법’(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참고문헌

- 강민주. 2019.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실질적 균등대우." <공익과 인권> 19: 3-34.
- 이창원, 최서리. 2016. "국내노동시장에서 중국동포 임금차별은 존재하는가? 중국동포와 한국인의 임금결정요인 비교 분석". <아세아연구> 59(4): 178-220.
- 이해용. 2014. "중장년 조선족 여성 이주노동자의 몸 아픔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30(1): 213-252.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2020. *World Migration Report 2020*. UN.
- Tsuda, Takeyuki. 2019. Korean Diasporic Returns. Tsuda Takeyuki and Changzoo Song eds. *Diasporic Returns to the Ethic Homeland: The Korean Diaspora in Comparative Perspective*. Palgrave Macmillan. Chapter 1. 3-16.

03

2021 다(多)가치포럼

제1차 토론회

주제토론

제도화된 차별은 억압이고 폭력이다.

김동훈(서울시서남권글로벌센터장)

양혜우 연구원의 발제문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혐오에 관한 현상을 명쾌하게 진단하고 정의를 내려준 빼어난 발제문이다. 차별과 혐오를 당연시하는 주장에 대하여 적절한 근거를 들어 제시하고 그 허구성을 증명해주었으며 이를 넘어서 그 의식에 자리한 근원을 논리정연하게 제시하여 주었다. 이는 현장 활동가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으로,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는 활동에 대한 이론적 논거를 제공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발제자는 “한국은 혐오 사다리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고 우리의 위치를 지적하였다. 동의한다. 아니 그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미 혐오라는 신념 체계를 확고히 한 사다리의 최고점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예시로 든 난민 정책, 건강보험제도 등을 넘어 최근의 방역 문제까지, 이미 국가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공공연히 드러내었다. 이는 국가가 차별적 정책으로 국민에게 혐오와 차별이 당연한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었다. 즉 한국 사회는 발제자의 우려를 넘어 이미 고정관념과 편견이 국가의 정책과 이데올로기가 만나 큰 힘을 발휘하고 있고 특히 극우 정치인과 보수언론이 한 편이 되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공고히 하는 몰이해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혐오는 감정에서 출발하여 하나의 신념 체계로 발전한다.”고 표현하였는데, 신념체계로 발전하는 그 사다리를 국가가 놓아주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한국 사회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시점에 ‘이러한 신념체계를 깨뜨리기 위해 국가의 책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며 우리는 그 국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하며 개선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라는 발제자의 메시지는 이주민 관련 활동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게 한다. 이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보다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공고히 하는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적극적 행위를 두 가지 측면에서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정치적 세력화를 추구해야 한다.

어렵고 쉽지 않은 길이다. 이주민들이 가진 정치적 힘은 미약하기 그지없고 통합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힘을 모을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다양한 세력이 하나로 뭉쳐질 때는 그 힘이 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합,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연대의 힘이다. 한국 사회는 다양한 소수자들이 존재한다. 필요에 따라 다양한 그룹과 연대를 통해 정치적 힘을 발휘해야만 한다. 중국동포라는 소수자 그룹이 난민, 이주노동자단체, 다문화라는 세력들과 연대하면 이주민이라는 큰 틀이 되고, 이들이 또다른 한국사회의 소수자그룹과 연대하면 더 큰 물결로 세력화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다양한 연대체를 만들어 내어 지역사회 정치세력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오로지 자신의 목소리에만 열중하면 정치세력화는 요원하다. 변화는 큰 물살을 만들어내야 가능하다. 그 시작은 작은 물줄기에서 시작한다.

둘째, 정책과 제도에 저항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주민들은 정부의 방역 정책에 가장 순응하는 집단으로 손꼽을 수 있다. 먼저 코로나19가 '우한폐렴'으로 명명되고 중국동포들이 전염의 매개체로 방역당국의 표적 감시대상으로 지목되고 온라인상의 온갖 혐오적 표현이 판을 칠 때도 중국동포들은 스스로를 유폐하고 외부활동을 자제하였으며, 지역사회 방역 활동에 앞장서는 등 지역 방역을 지켜내었다. 마스크 대란'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도록 제도화된 차별을 당연시하던 상황에서 이주민들은 외출의 권리를 강제로 박탈당했음에도 그에 순응하였다. 그럼에도 재난지원금 제도에서는 또 배제되는 아픔을 겪었다. 다행히 일부 인권단체들의 문제 제기로 일부 이주민의 경우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기는 하였으나 미등록체류자를 비롯한 수많은 이주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더불어 몇몇 지자체들은 외국인 주민에게 유독 강제로 코로나 선별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제도적 폭력을 가했다. 이주민권 단체들의 반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행정명령 철회를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수용하였으나, 경기도는 불수용을 결정하였고, 그 외 타 지자체는 아예 인권위 권고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이후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이주민을 전부 포함하였고, 최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서는 이주민을 전부 포함하는 등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일부 변화된 태도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저항하지 않는, 저항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이주민이 여전히 소외되고 차별받고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다.

국가가, 권력이 저지르는 제도적 차별은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이고 이는 수많은 소수자에

대한 억압이며 폭력이다. 우리는 이에 저항하고 맞서야 한다. 양혜우 연구원님의 훌륭한 발제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새로운 만남을 준비할 통일 한국의 미래와 이웃 공동체와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혐오의 사다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외침에 응답하며 반드시 올 그날을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친다.

외국인(조선족 동포) 혐오에 대한 대처

최현호(다(多)가치포럼운영위원)

토론에 앞서 간략한 본인 소개 드립니다. 저는 중국 연변 룡정에서 태어나 2015년부터 중국계 회사 한국 지사에 근무중입니다. 중국에서 생활할때에는 조선족으로서 자부심 및 민족 정체성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살았으며 민족 차별이나 이방인에 대한 혐오는 거의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5년간 한국생활을 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 조선족에 대한 혐오가 일상 생활에 너무 많이 발생하는것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 조선족으로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되었습니다.

앞서 발제자분들 여러 사례 및 논리적으로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중국 동포 조선족으로서 한국 생활에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아래 세 가지 내용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1.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원으로서 현지 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는 항상 동반하며 타당한 권리 요구를 위하여서는 우선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하며 기존 중국, 고향에서의 습관에서 벗어나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기본적인 법규는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조선족 동포의 함께하는 포용 의식 강화하여야 한다.

함께 살아가는 한국인, 외국인, 조선족 등에 대한 구분을 하지 말고 누구든 상대방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내가 필요한 도움을 받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포용의식 강화가 필요하다. 공정한 대우를 받기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한국인 동료, 지인부터 조선족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조선족에 대한 뉴스, 영화 등에 거론되지 않을 때, 서로에 대한 인정과 수용의 태도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3. 조선족 Gen Alpha 세대 한국사회 교육과정에 정체성 확립 필요.

한국 내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은 Gen X 세대의 단순노무, 작업을 통한 가족의 생계를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면 Gen Y 세대는 고등교육, 전문 기술을 토대로 사무직, 자영업 등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부의 축적을 통한 중산층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Gen alpha 세대의 출생과 더불어 한국 내 교육, 정체성에 대한 Gen Y 세대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Gen X, Gen Y 세대의 대부분은 중국의 교육과정을 거쳐 한국으로 이주한 형태여서 한국의 교육 과정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Gen Alpha세대에 대한 조선족 혐오 영상, 발언 발생 시 부모로서의 어떤 방식의 가이드를 해줄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문의 드리하고자 합니다.

* 세대구분

Baby Boomer(베이비 붐 세대): 1946 년생 ~ 1964 년생

Generation X (X 세대): 1965 년생 ~ 1980 년생

Generation Y (밀레 니얼 Y세대): 1981 년생 ~ 1996 년생

Generation Z (Z세대): 1997 년생 ~ 2010 년대 초반 생

Generation Alpha (알파 세대): 2010 년대 초반 생 ~ 현재

